

363굿닥터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운영규정 개요

시설구분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80명
건물면적	-연면적 2,601.83㎡ -건축면적 681.31㎡	소유형태	자가
전화번호	031-509-7582	팩스번호	031-509-7589
주 소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49번안길 1 (대야동)		

제 1부 총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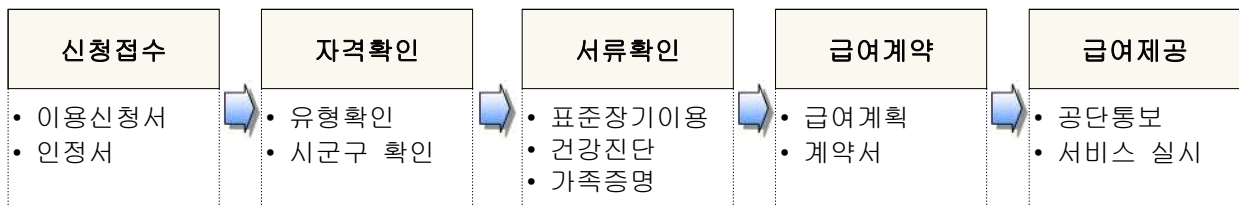
- 명칭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칭은 363굿닥터요양원(이하‘시설’)이라 한다.
- 목적 :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363굿닥터요양원(“시설”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부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입소정원 : 80인
- 입소대상 :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 입소모집

이용자(수급자)	홍보방법
온라인	공단사이트 등록,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오프라인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이용자(수급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직접홍보

4. 이용절차



5.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건강진단서 1부
- ⑤ 기타 해당 서류

제 3부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3. 계약해지 :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⑦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⑩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4부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2. 이용료 변경 및 절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3. 이용료 납부 :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 5부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급여제공 :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한다.

- ①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 ②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 ④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 ⑤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 ⑥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⑧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6부 특별한 보호를 필요한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②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관리한다.
4.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 7부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

1. 계약의사 진료

- ① 계약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계약의사의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진료비, 약제비등)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의료서비스 처리 절차

- ①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원장은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②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원장은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

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 ③ 원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8부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위험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휴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 9부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1. ‘서비스 실시 중에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①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③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①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 ②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 ③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④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⑤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4.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 5. 보호자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시설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0부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①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개정하여야 한다.
- ②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있다.
- ③ 개정이 운영위원회의 개정 요구에 따른 경우인 때에는 요구서면이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시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구인 및 관계인 등으로부터 개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대 의견을 들을 수있다.
- ⑤ 개정은 시설에서의 개정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시설장의 승인(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법인정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운영위원회의 개정 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있다.

2. 종사자 근무체계

직종별 직원 배치	시설장	사회복지사	계약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1	3	1	3	2.1명 * 1명
평균 근무자	평일 주간	교대 근무자를 제외한 전 인력-(근무표 참조)			
	평일 야간	요양보호사 중 야간근무자-(근무표 참조)			
	휴일 주간	행정당직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근무표 참조)			
	휴일 야간	요양보호사 중 야간근무자-(근무표 참조)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항목	비용	서비스 내용 및 산출 근거
식재료비	13,000원	식비 1식*3,800원*3식=11,400원 / 간식비 1일 1,600원
이미용	무료	미용봉사 이용
	실비	미용사 출장
상급병실	2인실	2일실 : 1일 10,000원 / 1인실 : 1일 30,000원
특별간식	실비	매주 1회 어르신들의 욕구에 의해 드시고 싶은 음식 구입하여 실시
외출외식	실비	원하시는 분에 한하여, 매월 1회 근교 등을 구경하고 드시고 싶은 음식을 음식점에서 대식함
병원비	실비	병원 진료비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약제비	실비	병원 처방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본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개인이 요구하는약품 (영양제, 파스 등)

4. 시설현황

연면적		2,601.83㎡		건축면적		681.31㎡	
시설현황							
생활실	특별침실	사무실 (원무실)	요양 보호사실	자원 봉사자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25	1	2	4	1	1	1	
식당, 조리실	프로그램 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실/ 건조실	대피실		
1	1	8	3	2	3		